

목포시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따른 의견청취 검토보고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01. 10.

제안자 : 목포시장

1. 제안사유

- 목포시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로 결정·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“체육공원 시설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【관련법규】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2. 그동안 추진사항

- 2023. 07. : 『목포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(안) 용역』 착수
- 2023. 09. : 현황기초조사(교통성, 환경성, 경관성 검토서) 및 입안서 작성
- 2023. 12. :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) 결정(변경) 신청 및 입안
- 2024. 01. : 주민 의견 청취, 관련 기관(부서) 협의

3. 주요내용

가.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개요

- 1) 위치: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69-60번지 일원
- 2) 면적: (당초) A= 18,076㎡ ⇒ (변경) A= 38,651㎡
- 3) 기간: 2024년
- 4) 목적
 - 체육공원 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
 - 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및 체육공원 기능 활성화

<도시계획시설 위치도>



나. 목포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시설) 결정(변경)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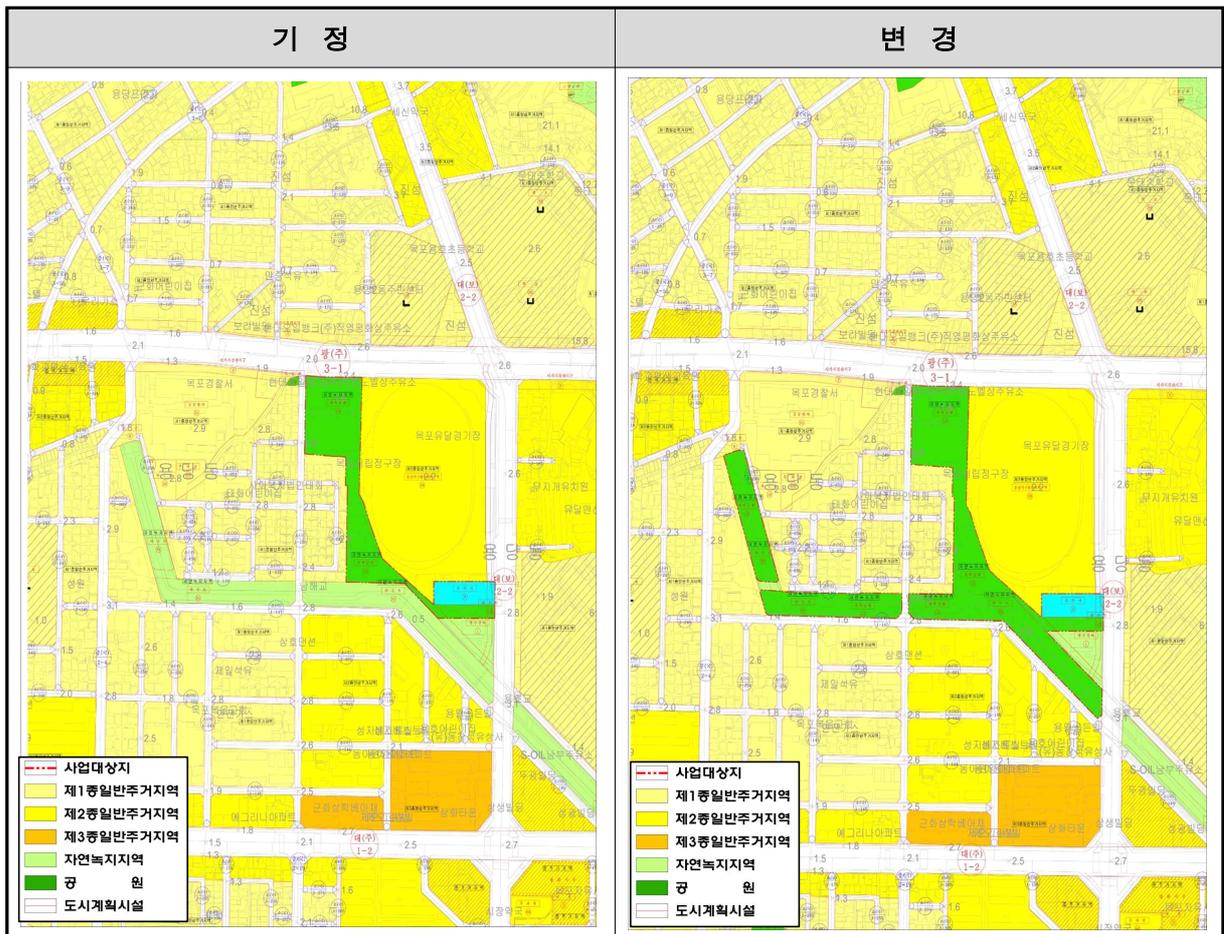
■ 체육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5	남해	체육 공원	목포시 용당동 일 원	18,076	증) 20,575	38,651	건설부 고시 제1986-176호 (1986. 4. 29.)	하수도24 중복결정

■ 체육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5	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적 변경 - 18,076㎡ → 38,651㎡ 증) 20,575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당동 일원 체육공원 변경을 통해 공원시설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자 함

< 도시 관리 계획 결 정 (변 경) (안) 도 >



4. 앞으로 추진계획

- 2024. 01. :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
- 2024. 02. :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
- 2024. 03. :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5. 검토의견

- 유달경기장 매각(2021. 6. 7.)으로 남해체육공원 부지가 축소되어 잔여 부지의 시설율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 및 [별표 4]에 따른 법정 시설율에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으로
- 인근 입암천(하수도) 일부를 공원으로 중복결정하여 기존 체육공원 면적 18,076㎡에서 20,575㎡ 증가 된 38,651㎡로 변경 조성하고 도시 계획시설을 양성화하여 시민들에게 휴게공간 제공 및 편의시설 조성 하고자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 계획(체육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임.